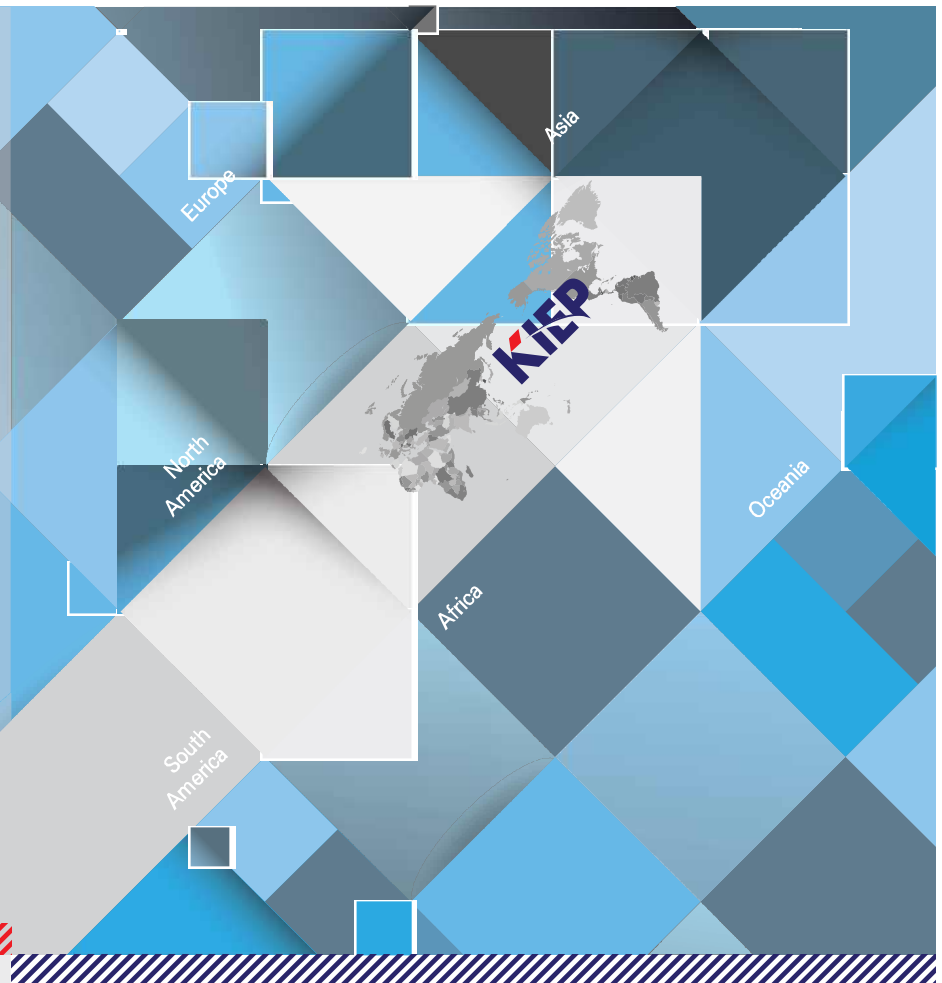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20

2018년 9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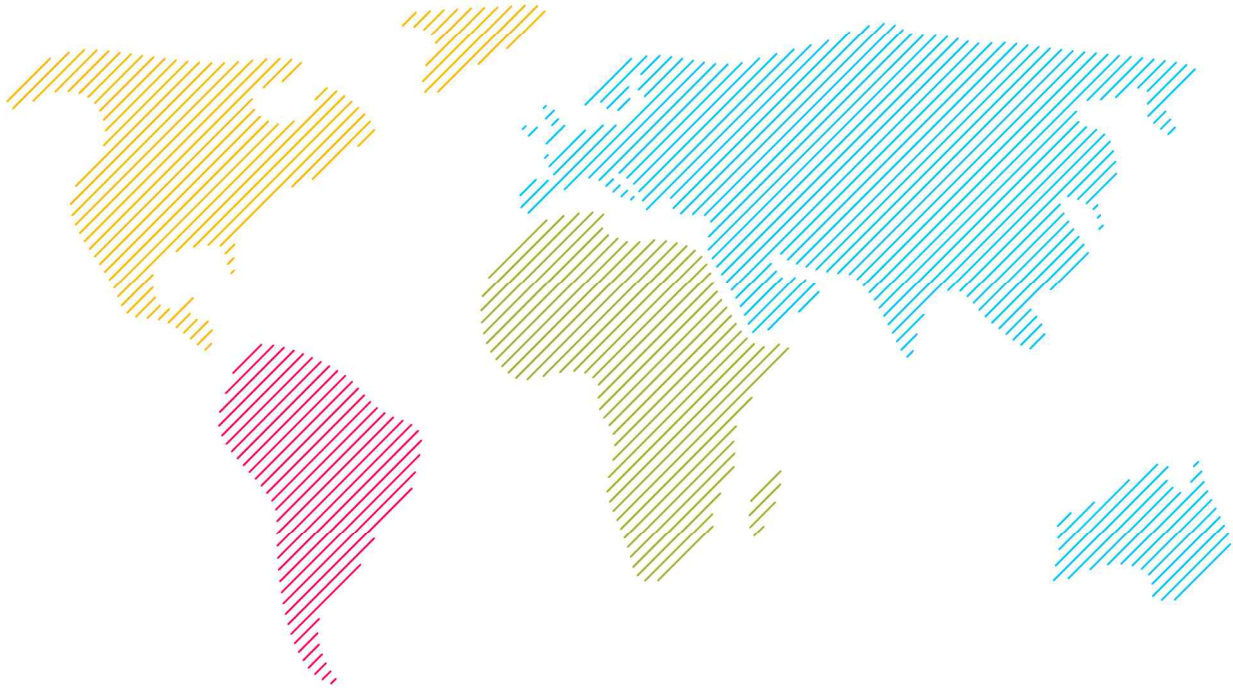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박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jhpark@kiep.go.kr, 044-414-1136)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요약

- ▶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1998년 9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한 이후 WTO 산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이후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적용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MC11 이전에는 MC11 성과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주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상거래의 다자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이며 규범마련에는 반대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과의 대립이 지속
 - MC11 이후에는 MC11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탐색적 작업(exploratory work)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주제별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전자서명, 전자인증, 서류 없는 무역 등 무역원활화적 쟁점들은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경 간 정보 이전, 데이터 현지화, 강제된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있음.
- ▶ 한·미 FTA, TPP 등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WTO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쟁점들이 인정되거나 채택되었음.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는 기존 FTA나 RTA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우리가 한·미 FTA에서 수용한 조항을 기초로 다음의 제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온라인 소비자보호 제안 검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무역규범이 필요
 -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및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됨.
 - 무역원활화적인 요소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서류 없는 무역 등의 제안 검토: 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보장은 전자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 ▶ 새로운 통상이슈로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무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및 전자상거래 작업반 구축을 지지할 필요
- ▶ 한편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에 대한 개도국, 아프리카 그룹의 반대로 다자체제에서의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경우, 복수국간 합의 논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서론

2.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가. 논의 동향(MC11 전후)

나. 주요 쟁점

3. 주요국 제안서 내용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아프리카 그룹

4. 주요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및 비교

가. 한·미 FTA

나. TPP

다. 한·미 FTA, TPP, WTO 전자상거래 논의 비교

5.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됨.

-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들에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문, 결제, 배송, 통관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이를 위한 작업계획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이후 2018년 상반기 동안 MC11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의 회의인 공동선언 회의가 5차례 개최되면서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탐색적 작업(exploratory work)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주제별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다자규범 수립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적용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
-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이나 복수국간협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미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자상거래 협정문에는 WTO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들이 포함되었고,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 새로운 통상이슈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DDA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매우 중요

- 이에 MC11 전후를 중심으로 WTO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한·미 FTA, TPP, 주요국 WTO 제안서 등을 토대로 향후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우리의 입장 및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가. 논의 동향

1) MC11 이전

■ WTO에서의 전자상거래¹⁾ 논의는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재의

1) 전자상거래는 1998년 9월 채택된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전달(the term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됨.²⁾

■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무역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

- 동 선언문에는 일반이사회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무역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작업프로그램과 관련된 WTO 산하 기구들이 참여하며, 개도국의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개발 수요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관행을 지속하며, 그 연장은 작업계획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³⁾

■ 1998년 9월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채택⁴⁾

- 일반이사회는 작업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 산하 기구인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지식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 등이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무역관련 이슈들의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4개 WTO 산하 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
 -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법적 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 및 보고
 - 상품무역이사회는 1994년도 GATT 조항, WTO 협정 부속서 1A에 포함되는 다자간무역협정, 승인된 작업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 및 보고
 - 지식재산권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검토 및 보고
 - 무역개발위원회는 개도국의 경제, 금융 및 개발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의 개발 영향 조사 및 보고
-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4개 산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01년 도하, 2005년 홍콩, 2009년 제네바, 2011년 제네바, 2013년 발리, 2015년 나이로비,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에서 모두 한시적으로 차기 회기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작업프로그램은 향후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회원국들 간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음.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을 의미한다고 정의.

2) WTO, WT/GC/W/78, 1998. 2. 9.

3) WTO, WT/MIN(98)/DEC/2, 1998. 5. 25.

4) WTO, WT/L/274, 1998. 9. 30.

표 1.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WTO 산하 기구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이사회	- GATS 제1조 범위(공급모드 포함) - GATS 제2조 최혜국대우 - GATS 제3조 투명성 - GATS 제4조 개도국의 참여 확대 - GATS 제6조, 제7조 국내규제, 표준, 인정 - GATS 제8조, 제9조 경쟁 - GATS 제14조 개인정보 및 공중도덕 보호, 사기 방지 - GATS 제16조 전자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 -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 공공 통신운송망과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통신부속서) - 관세 - 분류
상품무역이사회	- 전자상거래 관련 상품의 시장접근 - GATT 1994의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 GATT 1994의 제2조에 정의된 관세 및 기타 관세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 - 원산지규정 - 분류
지식재산권이사회	-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보호 및 강화 - 상표권의 보호 및 강화 - 신기술 및 기술에 대한 접근
무역개발위원회	- 전자상거래가 개도국(특히 중소기업)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자상거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전과 방법: 자연인의 이동, 기술이전, 인프라 접근 개선의 역할 - 다자무역체제에서 개도국의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 - 전자상거래가 개도국의 상품유통을 위한 전통적인 수단에 미치는 영향 - 개도국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

자료: WTO, WT/L/274 참고로 저자 정리.

■ MC11이 개최되기 이전까지는 MC11 성과물 도출을 위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 WTO 산하 기구에서의 개별 이사회/위원회 논의는 진전이 없었으며, 주도국 중심의 비공식논의가 지속됨.

■ 전자상거래의 다자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이며 규범 마련에는 반대하는 아프리카, LDC 그룹 간 대립이 지속

- 일본, 러시아, EU 등 전자상거래 논의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작업반 구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논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기존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논의만 수용하며, 전자상거래 협상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주장. 1998년 작업계획에 따른 WTO 산하 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 진전은 곤란하다고 강조

- 디지털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설득작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다수 회원국이 전자상거래를 개발 이슈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에 관심을 표명

■ 전자상거래 쟁점 중 논란이 있는 이슈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전자계약, 전자결제 등 무역원활화 이슈 및 투명성, 소비자보호 등이 주로 논의되었음.

- 민감한 이슈인 국경 간 정보 이전이나 데이터 현지화 등은 현시점에서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MC11 성과 도출을 위해 개도국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진전이 없자, MC11 이후에는 관심 있는 국가들만의 논의를 검토

2) MC11 이후

(가) MC11 각료회의 결과

■ 전자상거래 각료결정⁵⁾

-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WT/L/274)에 명시된 지침(mandate)을 기초로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합의
 - 일반이사회는 관련 WTO 기구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2018년 7월, 12월 및 2019년 7월에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차기 각료회의 때 보고
 - 2019년으로 예정된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

■ 전자상거래 공동선언⁶⁾

-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 71개국(EU 28개국 포함)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포괄적인 무역 및 개발을 위해 창출되는 기회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음.
- 동 선언문은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방성, 투명성, 비차별,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WTO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한 향후 WTO 협상을 위한 탐색적 작업(exploratory work)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5) WTO, 2017.12.1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6) WTO, 2017.12.13,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0.

(나) MC11 이후 논의

■ MC11 이후 WTO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MC11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참가국들은 MC11 공동선언에 따른 향후 작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⁷⁾ 동 회의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개방되어 있음.
- 공동선언 회의는 MC11 이후 2018년 8월 현재 5차례(3, 4, 5, 6, 7월)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별로 주제를 정해 탐색적 논의를 지속
 - 동 회의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국경 간 정보 이전, 데이터 현지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주장한 반면, EU 등은 전자서명, 암호화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쉽게 도출이 가능한 성과(low-hanging frui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⁸⁾
 -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은 미국, EU, 브라질, 코스타리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71개국이며, 중국, 파키스탄 등은 공동선언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회의에는 참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3월 회의]⁹⁾ 첫 회의에서는 절차적 사항, 회원국의 기대 수준 등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따른 향후 논의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미국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원하고 있지만¹⁰⁾ 일부 회원국은 디지털 격차를 강조하며 탐색적 수준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전자상거래 공동회의 4월 회의]¹¹⁾ 동 회의부터는 향후 협상을 전제로 한 실질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주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

- 미국, EU, 일본 등 많은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에 대한 필요성 언급
- 미국, 일본 등은 자유로운 정보 이동을 강조한 반면 EU 등 일부 회원국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주장
- 대다수 회원국들은 서류 없는 무역, 전자서명, 인증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요소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나타내지 않음.

■ [전자상거래 공동회의 5월 회의]¹²⁾ 회원국 제안서에 열거된 이슈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논의를 시작함. 5월 회의에서는 △통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및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접근 △기업신회 △투명성 등 4개 주제로 논의

- 통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및 로지스틱스(logistics):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무역원활화협정(TFA) 관련 조항의 이행에 대한 논의로 서류 없는 무역, 관세절차 공표, 무관세한도액(de minimis)¹³⁾ 등

7)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2018. 7. 20), "Divisions emerge as some WTO members push for e-commerce plurilateral."

8)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2018. 7. 20), "Divisions emerge as some WTO members push for e-commerce plurilateral."

9) WTO(2018), "First Meeting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14 March 2018."

10)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2018. 7. 20), "Divisions emerge as some WTO members push for e-commerce plurilateral."

11) WTO(2018), "First Meeting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18 April 2018."

12) WTO(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Thematic Framework."

13) 미국은 합리적인 무관세한도액(de minimis) 도입을 주장, 이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국경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수출기업에 중요하다고 언급, 현재 미국의 무관세한도액은 800달러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캐나다(16달러), 멕시코(50달러)의 무관세한도액 수준을 800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 2018. 4. 13, "U.S. sets out goals for e-commerce negotiations at WTO").

-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관련 기술중립성(기존의 양허약속이 새로운 기술에도 적용), 서비스 분류 체계 개선
- 기업신평: 기업신평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 소스코드, 강제된 기술이전, 차별적 기술요건, 사이버 보안
- 투명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접근 가능성, 통보 체계 구축 등

■ [전자상거래 공동회의 6월 회의]¹⁴⁾ 주제별 전자상거래 주요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는 회원국과 규범 수립에 반대하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 존재, 6월 회의에서는 △전자거래 활성화 △정보 이동 △소비자신평 △인프라 및 디지털 격차 등의 주제로 논의

- 전자거래 활성화: 온라인 결제시스템, 환불절차, 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 정보이동: 예외 규정을 포함한 국경 간 정보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 소비자신평: 소비자보호, 원치 않는 통신(스팸), 개인정보보호 등
- 인프라 및 디지털 격차: 무역원조, 국제기구 간 협력, 통신(WTO 통신서비스 참조문서 포함) 등

■ [전자상거래 공동회의 7월 회의]¹⁵⁾ 7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회의가 마무리됨. 동 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접근 및 비차별 △지식재산권 △협력 등의 주제로 논의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 접근 및 비차별: 오픈 네트워크 및 인터넷, 망 중립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비지식재산권(Non-IP) 콘텐츠에 대한 책임, 온라인 플랫폼 접근 등
- 지식재산권: 온라인 지식재산권, 무역기밀, 저작권자의 수익 및 저작권의 영역 등
- 협력 및 구조적 이슈: 회원국 및 규제당국 간의 협력, 공공 및 민간 협력, 국제기구 간 협력, 개도국 및 LDC 국가들을 위한 법률 구조 및 기술 지원

■ 2018년 상반기 회의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탐색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의 제안서에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음. 하반기 논의에서도 논의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일부 회원국들의 영향으로 탐색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나. 주요 쟁점

■ MC11 이후 무역 관련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주제별 탐색적 작업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봄.

14) WTO(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Thematic Framework."

15) WTO(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Thematic Framework."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수입 감소를 우려해 영구적으로 무관세하는 규범 제정에 반대
 - 인도와 남아공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모라토리엄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는 개도국에 더 많은 수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¹⁶⁾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수익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언급
 - 일부 회원국들은 내국세,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국경 간 정보 이전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적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무역 관련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이슈이므로 WTO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WTO 차원의 새로운 규범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
-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사전승인

- EU가 제안서를 통해 사전승인 금지를 주장함. 일부 회원국은 사전승인이 금융서비스 등 디지털화된 서비스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사전승인의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요구
 - 사전승인이란 동일한 서비스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

■ 소스코드, 강제된 기술이전 등

- 미국은 소스코드의 보호,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등에 대해 WTO 차원의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일부 국가는 기업 측면이 아닌 국가적 측면에서 공공목적으로 필요 시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 소비자보호

- 사기, 기만적인 행위 및 스팸메시지로부터의 보호원칙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이 공감,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자규범 수립을 주장
- 한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내규제가 전자상거래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16) Washington Trade Daily(2018. 7. 16), "Reexamining Electronic Commerce Duties."

■ 디지털 격차

- 일부 국가는 디지털 격차가 개도국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역원조 활용, 기술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제안
- 또한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규제와 신축성이 필요하며,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통신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음.
- 일부 개도국은 각 국가마다 전자상거래의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 제정보다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

■ 지식재산권

- 일부 개도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수익배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 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등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저작권자의 수입 관련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 같이 지재권을 다루는 기존의 논의 체계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 투명성

- 전자상거래 관련 법이나 규제절차 등을 WTO에 통보하는 규범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존 WTO 협정과 중복되는 문제, 통보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표 2. 주제별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하위 주제	쟁점	관련 WTO references
주제 A: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활성화		
통관,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 서류 없는 무역 - De minimis 면제 - 통관절차 개선 - 로지스틱스 및 배송서비스	- 무역원활화협정 Arts. 7.1.2, 7.2, 10.2, 7.8.2(d) - 원산지규정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 XVII, XVIII) - GATT Arts. XI
전자거래 활성화	- 온라인 결제 해결 및 보안 - 환불절차 - 전자거래 프레임워크(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계약 및 트러스트서비스)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 XVII, XVIII) - 금융서비스 부속서 - 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허 - GATS Arts. VI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 무관세 모라토리엄 -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 MC11 각료결정

하위 주제	쟁점	관련 WTO references
주제 B: 개방성 및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장접근	-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 분류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 XVII, XVIII) -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참조문서 등
정보 이동	- 데이터 이동 - 면제 범위 - 투명성 - 데이터 현지화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 XVII, XVIII) - GATS Arts. II, III, VI - GATS Arts. XIV - 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허
접근 및 비차별	- 오픈 네트워크 및 오픈 인터넷 - 공공/정부 데이터 접근 - 망 중립성 - 디지털 제품 대우 - 비지식재산권(Non-IP) 콘텐츠에 대한 책임 - 온라인 플랫폼 접근 - 사전승인	- GATT Arts. I, III - GATS Arts. II, VI - GATS 통신서비스 부속서 등
주제 C: 신뢰 및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신뢰	- 산업데이터 보호 -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 강제된 기술이전 - 암호화 기술 - 비차별 기술요건 - 사이버 안보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I, XVIII) - TRIPS Arts. 9, 10, 13, 39 등
소비자신뢰	- 소비자보호 - 원치 않는 전자적 메시지(스팸) - 개인정보보호	- GATS Arts. VI - GATS Arts. XIV - GATS 통신서비스 부속서 - 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허 등
지식재산권	- 온라인 지식재산권 - 무역기밀 - 저작권 이슈	- TRIPS 협정 Arts. 3, 4, 9, 10, 13, 39 등
주제 D: Cross cutting issues(개발, 투명성, 협력 포함)		
투명성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행정조치 출판 - 보고 메커니즘	- GATS Arts. III, VI - GATS Arts. X - 무역원활화협정 - TRIPS Arts. 63, 69
인프라 및 디지털 격차	- 시장접근 약속 관련 - 통신서비스 참조문서 - 무역원조 - 국제기구 간 협력 - 회원국 간 협력	- 관련 서비스에 대한 GATS 구체적 약속(Arts. XVI, XVII, XVIII) - GATS 통신서비스 부속서 -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참조문서 - 무역원활화협정 - TRIPS Arts. 66.2, 67
협력	- 회원국/규제당국/공공, 민간 분야, 관련 국제기구 간 협력 메커니즘	- 마라케쉬협정 Arts. III.5, Arts. V - TRIPS Arts. 66.2, 67, 69 등

자료: WTO(2018. 7),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Snapshot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주요국 제안서 내용

가. 미국¹⁷⁾

■ 미국은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무역 조항들을 제안

■ 자유로운 정보 이동

-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 인터넷 사용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임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제한 없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현지화 금지: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WTO 차원의 규범 필요, 기업에 현지에서의 자본집약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웹 차단 금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부가 임의로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필터링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디지털 제품의 공정한 대우

- 디지털 제품의 면세 대우: WTO 회원국은 1998년 이래로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영구히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함.
-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비차별주의 원칙은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핵심임. 제품이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배포될 때 비차별대우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함.

■ 정보보호

- 소스코드 보호: 기업은 시장접근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영업 비밀 또는 알고리즘을 공유해서는 안 됨. 정부가 합법적인 규제 목표를 이루면서도 독점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강제된 기술이전 금지: 시장접근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 기술 및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독점적 정보의 이전을 금지해야 함.
- 차별적 기술요건 부과 금지: 시장접근의 조건으로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표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강점을 약화시킴. 현지 기술표준 사용 요건을 금지해야 함.

17) WTO(2018. 4. 12), JOB/GC/178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디지털 보안

- 암호화: 암호화는 디지털 영역에서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임. 공급업체가 혁신적이고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국가별 암호화 표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디지털 무역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음.
-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위험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이버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정부가 무역 제한 및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는 사이버 보안 조치를 구축하도록 보장해야 함.

■ 인터넷서비스 촉진

- 디지털 관련 시장접근 약속: 현재의 서비스 양허표(GATS하에서의 서비스 분류)는 시대에 뒤쳐져 기존의 양허가 신기술¹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들은 기존의 서비스 분류 및 양허가 신기술에도 적용된다는 데 합의해야 함.
- 오픈 데이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 및 이용 촉진은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공공 데이터 공개 및 데이터의 검색, 회수, 활용, 재활용, 재배포 등을 장려해야 함.
- 비지식재산권(Non-IP) 콘텐츠에 대한 책임: 제3자가 생산한 정보를 단순저장, 처리, 제공하는 인터넷 매개 플랫폼이 동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함. 제3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중개자가 책임을 질 경우, 활발한 온라인 포럼을 억제하고 사용자 참여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경쟁적 통신 시장

- 통신서비스 개방은 모든 국가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첫 단계임. 지난 20년간 통신서비스 참조문서(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¹⁹⁾가 GATS 규범과 함께 통신서비스 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참조문서를 채택하지 않은 회원국은 참조문서를 채택해야 함.

■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무역원활화협정(TFA)에 포함된 조항은 디지털 무역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들은 TF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 합리적인 무관세한도(de minimis) 수준은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 중요하며, 이는 중소 수출업체가 세계 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18)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

19) WTO 참조문서(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는 기본통신 분야의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WTO 통신부속서 제정에 관한 협상 중 미국에 의해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통신 시장의 개방 협상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 장치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1999년 4월 채택된 문서임. 참조문서는 필수 설비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공정경쟁 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기준 공개, 독립적 규제기관, 희소자원의 할당 등에 관한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관세청, 관세용어사전).

나. EU20)

■ EU는 향후 WTO 협상을 염두에 둔 탐색적 작업을 제안하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전자계약, 전자인증과 트러스트 서비스(trust service), 소비자보호, 스팸,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인증요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을 제안함.

■ 전자계약

- 전자계약과 오프라인 계약의 법적 효력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규범을 개발하고, 국가법률 시스템이 계약을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전자인증 및 트러스트서비스

- 전자인증의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전자거래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적합한 전자거래 방식을 선택하도록 보장해야 함.

■ 소비자보호

- 각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 제도를 보장하고, 소비자보호 조치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당국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함.
- 소비자보호를 보장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적 국내 프레임워크를 채택, 유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

■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

- EU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업적 통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기술중립적인 의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수신자 스팸 거부를 가능하도록 하고, 원치 않는 상업용 전자메시지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동의하는 규범 개발 고려

■ 사전승인

- 오프라인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사전승인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 개발 고려

20) WTO(2018. 5. 16), JOB/GC/188 참고하여 저자 정리.

- 통신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전자거래 관세에 대한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적인 연장에 동의할 것을 제안

다. 중국²¹⁾

■ 중국은 전자상거래 이슈들의 복잡성과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를 감안하여 쉬운 문제(easy issues)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상품무역 원활화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물류 및 결제시스템)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
- 특히 전자상거래 논의는 개도국, 소규모 취약국가(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및 최빈개도국(LDCs)의 중소기업이 국제무역 및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간 무역 규범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국경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물품 목록 작성
- B2C 거래 시 세금 환급방안 모색
- 세금 정책을 포함, 반품 상품에 적용되는 정책 명확화
- 통관, 검사 및 검역 관련 간소화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 제공
- 유통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설치 허가, 통관 절차 및 관세 부과에 관한 편의 제공 허용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규제 조치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 전자 및 온라인 결제, 물류 및 택배, 온라인 통관 및 기타 무역원활화 서비스를 포함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조치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통한 서류 없는 무역 촉진 및 데이터 교환 촉진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고, 온라인 무역 금융과 관련한 정책 및 규제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21) WTO(2016. 11. 16), JOB/GC/110/Rev.1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물류 및 택배 서비스, 결제서비스와 같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협력 강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해야 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행정조치 출판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상품의 수입 및 수출(특히 B2C)과 관련한 절차의 인터넷 게재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회원국의 문의에 응답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적 여건을 개선해야 함.

- 디지털 인증, 전자서명, 전자인증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 디지털 인증과 전자서명을 상호 인정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 촉진
- 개도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적 여건 개선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모색

■ 기타 관련 이슈

-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이슈에 대해 각국의 법률, 규정, 행정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라. 아프리카 그룹²²⁾

■ 작업반 구축

- 아프리카 그룹은 전자상거래 작업반 구축에 반대
- 1998년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라 이슈에 대한 탐색적 작업을 계속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작업계획의 현행 구조나 제도적 합의를 넘어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규범

- 아프리카 그룹은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에 반대함. 새로운 규범 제정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개도국의 산업정책 능력을 악화시킴.
- GATT/WTO 체제 내에서의 불균형(imbbalances)에 대한 적정한 고려 없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규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곤란

22) WTO(2017. 10. 20), JOB/GC/144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개발

- 개도국 및 LDC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제품의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능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 및 지원이 있어야 함.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화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증가와 개도국의 관세수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 연장에 반대

4. 주요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및 비교

가. 한·미 FTA

-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 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조항의 성격에 따라 일반규정, 의무규정 및 협력규정, 정의 등으로 구분됨.

- 의무규정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협력규정은 온라인 소비자보호, 서류 없는 무역,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국경 간 정보 이전 등으로 구성

표 3.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 조항

	조항
일반규정	제15.1조(일반조항)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의무규정	제15.3조(디지털 제품):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비차별대우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협력규정	제15.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15.6조(서류 없는 무역)
	제15.7조(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15.8조(국경 간 정보 이전)
정의	제15.9조(정의)

자료: 산업부, FTA강국, KOREA,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저자 정리.

[협정문 주요 내용]**■ 디지털 제품²³⁾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제15.3조)**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해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음.²⁴⁾
 -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도 무관세 적용²⁵⁾
-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 디지털 제품이 상대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생, 저장, 전송, 계약, 발주되는 경우 및 그 디지털 제품의 저작자, 공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상대국의 국민인 경우에만 내국민대우 적용
 -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및 단순배포자인 경우 내국민대우 적용 제외
 -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단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는 제외²⁶⁾
 - 정부보조금, 무상교부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내국민대우 적용 배제
 - 콘텐츠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는 비차별대우 및 무관세 적용에서 배제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5.4조)

-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
- 다만 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과 같은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국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²⁷⁾

■ 온라인 소비자보호(제15.5조)

-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와 기만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의 소비자보호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서류 없는 무역(제15.6조)

-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
- 전자무역행정문서의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23)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한·미 FTA 협정문 제15.9조).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세 또는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 제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한·미 FTA 협정문 제15장 전자상거래, 각주 1).

25) 관계부처 합동(2012. 6), 「한·미 FTA 주요 내용」, p. 142 인용.

26) 외교부, 2011. 7.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p. 133 인용.

27) 관계부처 합동, 2012. 6. 「한·미 FTA 주요 내용」, p. 142 인용.

■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제15.7조)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도록 규정
- 각 당사국은 소비자가 △당사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해 접근 및 사용하는 것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당사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함.

■ 국경 간 정보 이전(제15.8조)

- 무역원활화를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
-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정보(electronic information) 이동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

나. TPP

■ TPP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 부문(제14장)은 총 18개 조항으로 일반규정, 의무규정, 협력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총 11개 조항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온라인 소비자보호,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설비 위치,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 소스코드 등이 포함되며, 협력규정은 5개 조항으로 서류 없는 무역,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회원국 간 협력 등이 포함됨.

표 4.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 조항

	조항
일반규정	제14.1조(정의)
	제14.2조(적용범위 및 일반조항)
의무규정	제14.3조(관세)
	제14.4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14.5조(국내 전자거래 체계)
	제14.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4.7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14.8조(개인정보보호)
	제14.11조(국경 간 정보 이전)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제14.14조(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
	제14.17조(소스코드)
	제14.18조(분쟁해결)

	조항
협력규정	제14.9조(서류 없는 무역)
	제14.10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4.12조(인터넷 접속료 분담)
	제14.15조(회원국 간 협력)
	제14.16조(사이버보안에 관한 협력)

자료: USTR, 'TPP Full Text'에서 저자 정리.

[협정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및 일반 조항(제14.2조)

-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정부조달'과 '정부에 의해 보유, 수집, 처리된 정보 및 관련 조치'에 대해 전자상거래 장 전체의 적용을 배제함.

■ 관세(제14.3조)

-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됨. 단, 본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경우 내국세,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음.

■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제14.4조)

-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적용배제 대상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정보보호금 및 무상교부금, 방송(broadcasting) 등임.

■ 국내 전자거래 체계(제14.5조)

- 회원국은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상거래모델법(UN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또는 UN 전자통신협약의 원칙(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과 일치하도록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체계를 유지해야 함.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4.6조)

- 서명이 전자적인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법적 유효성을 부인해서는 안 됨.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거래에 적합한 전자인증 방법을 상호 간에 결정할 수 있음.

■ 온라인 소비자보호(제14.7조)

- 전자거래 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제14.8조)

-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을 고려해야 함.

■ 서류 없는 무역(제14.9조)

-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를 전자 형식으로 일반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와 종이 형식의 문서를 법적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함.

■ 국경 간 정보 이전(제14.11조)

- 각 당사국은 사업자(person)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일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해야 함.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허용

■ 컴퓨팅설비의 위치(제14.13조)

- 어떤 당사국도 당사국 영역에서의 사업 수행을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팅설비를 이용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허용

■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제14.14조)

- 각 당사국은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에 대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함. 수신자가 스팸 수신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각 당사국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스팸메시지를 최소화하는 조치 등임.

■ 소스코드(제14.17조)

- 어떤 당사국도 자국의 영토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 됨.
- 대량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은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주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이전이나 접근 요구가 가능함.

다. 한·미 FTA, TPP, WTO 전자상거래 논의 비교

■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285개 RTA 중 25% 이상이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하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 챕터가 있는 RTA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더 증가할 전망²⁸⁾

■ 한·미 FTA와 TPP는 전자상거래 챕터가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이루어짐.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TPP가 타결되기 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문이었으며, TPP는 기체결 FTA에서 수용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

- 한·미 FTA는 의무조항 2개, 협력조항 4개, TPP는 의무조항 11개, 협력조항 5개로 한·미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

표 5. TPP,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 비교

TPP	한·미 FTA	WTO MC11 공동결정문
제14.1조(정의)	제15.9조(정의)	-
제14.2조(적용범위 및 일반조항)	제15.1조(일반조항)	-
-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제14.3조(관세)	제15.3조(디지털 제품):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한시적 무관세
제14.4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15.3조(디지털 제품):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
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	-
제14.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제14.7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15.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
제14.8조(개인정보보호)	-	-
제14.9조(서류 없는 무역)	제15.6조(서류 없는 무역)	-
제14.10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5.7조(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
제14.11조(국경 간 정보 이전)	제15.8조(국경 간 정보 이전)	-
제14.12조(인터넷접속료 분담)	-	-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	-
제14.14조(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	-	-
제14.15조(회원국 간 협력)	-	-
제14.16조(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	-
제14.17조(소스코드)	-	-
제14.18조(분쟁해결)	-	-

주: 빨간색은 의무 규정, 파란색은 협력 규정을 나타냄.
자료: 저자 정리.

28) WTO(2018), E-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전자상거래 조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과 관련된 RTA에서 주로 발견되었지만, 개도국 간의 협정에서도 점차 발견됨. 전자상거래 챕터가 있는 63개의 RTA 중 30%는 개도국 간 체결(6%는 선진국 간, 64%는 개도국·선진국 간)임.

■ 영구적 무관세

- WTO 각료결정에서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선언은 한시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미 FTA와 TPP에서는 무관세 선언의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즉 한·미 FTA와 TPP에서는 영구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 무관세 대상

- WTO 각료결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로 무관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한·미 FTA에서는 무관세 대상을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으로 구체화하였음.
- TPP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²⁹⁾’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이라고 명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무관세 대상으로 규정
- WTO 각료결정문에서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분류할지 서비스로 분류할지 논란이 있었으나, 한·미 FTA나 TPP에서는 분류와는 상관없이 ‘디지털 제품’은 영구적으로 무관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수수료(fees), 기타 부과금(other charge)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문에 명시하였지만, 협정문 각주 1에서는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내국세(internal taxes) 또는 기타 국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³⁰⁾
 - TPP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내국세, 수수료,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문에 명시

■ 국경 간 정보 이전

- TPP에서의 ‘국경 간 정보 이전의 허용’은 모든 무역협정에서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규정임.
- 한·미 FTA에서는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명시한 반면, TPP에서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는 한·미 FTA에는 없는 조항인데, TPP에서는 강화된 규범인 의무조항으로 포함
- TPP에서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것은 ‘제14.11조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의무조항으로 수용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협력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변경

- 한·미 FTA에서 협력조항인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이 TPP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29) 정보통신학회(2017)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의한 콘텐츠’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 재화’와 개념상 동일하다고 언급함.

30) 한국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신규 조항

- 한·미 FTA에 비해 TPP에 새로 도입된 조항은 전자거래에 대한 국내법 체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접속료 분담, 컴퓨팅설비 위치,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 회원국 간 협력,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소스코드, 분쟁 해결 등 9개 조항임.

표 6. 한·미 FTA, TPP, WTO 전자상거래 논의 비교

	한·미 FTA	TPP	WTO 각료결정
구성	의무조항 2개, 협력조항 4개	의무조항 11개, 협력조항 5개	-
무관세	영구적	영구적	한시적
무관세 대상	디지털 제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포함	전자적 전송물
국경 간 정보 이전	노력	허용(법적 구속력)	-
개인정보보호	없음	의무조항	-
협력조항에서 의무조항 변경	-	온라인 소비자보호, 국경 간 정보 이전	-
신규 조항	-	전자거래에 대한 국내법 체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접속료 분담, 컴퓨팅설비 위치,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 회원국 간 협력,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소스코드, 분쟁해결	-

자료: 저자 정리.

5. 시사점

■ WTO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어느 쟁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한시적 무관세 합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무관세 대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같이 다자체제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FTA나 RTA에서 전자상거래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음. 한·미 FTA, TPP 등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WTO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쟁점들이 인정되거나 채택되었음.

-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는 기존 FTA나 RTA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우리가 한·미 FTA에서 수용한 조항을 기초로 다음의 제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온라인 소비자보호 제안 검토

- 전자상거래의 무역환경 변화가 가져온 특징 중 하나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무역규범이 필요함.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 정립은 소비자신뢰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WTO 논의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미국과의 FTA에서 협력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다자체제에서는 실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및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이나 규정이 상이한데, 개인정보보호 규범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됨.

- 무역원활화적인 요소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서류 없는 무역 등의 제안 검토

-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요건으로 WTO 논의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적인 요소에는 공감대를 형성
- 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보장이 전자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통상이슈로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앞으로의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무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및 전자상거래 작업반 구축을 지지할 필요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며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며, 작업반 구축은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 및 진전을 위해 요구됨.

■ 한편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에 대한 개도국, 아프리카 그룹의 반대로 다자체제에서의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경우, 복수국간 합의 논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2. 6. 「한·미 FTA 주요 내용」.
-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 외교부. 2011. 7.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7. 12. 「새로운 산업·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수립」.

[영문자료]

-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 2018. 4. 13. "U.S. sets out goals for e-commerce negotiations at WTO."
- _____. 2018. 7. 20. "Divisions emerge as some WTO members push for e-commerce plurilateral."
- Washington Trade Daily. 2018. 7. 16. "Reexamining Electronic Commerce Duties."
- WTO. 1998. "Global Electronic Commerce Proposal by the United States." WT/GC/W/78.
- _____. 199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 _____. 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 _____. 2016.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iming at the 11th Ministerial Conference, Communicat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kistan." JOB/GC/110/Rev.1.
- _____. 2017.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0.
- _____. 2017.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5.
- _____. 2017.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tatement by the African Group." JOB/GC/144.
- _____. 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78.
- _____. 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Establish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JOB/GC/188.
- _____. 2018. "E-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 _____. 2018. "First Meeting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14 March 2018."
- _____. 2018. "First Meeting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18 April 2018."
- _____. 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Thematic Framework."
- _____. 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Snapshot."

[웹사이트]

산업부. FTA 강국, KOREA,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

USTR. “TPP Full Text.”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